



2005 한국종합사회조사 자료집

(프로빙 지침)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110-745)

종로구 명륜동3가 53

(전화) 02-760-1270 (팩스) 02-744-6169 <http://www.src.re.kr> src@dragon.skku.ac.kr

《프로빙 지침》

응답자가 모르겠다고 하거나 응답을 계속해서 못할 경우에 다음과 같이 프로빙을 한다.

내용		프로빙 지침
문항	용어	
18.3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기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규칙들을 없애거나 느슨하게 적용시키는 것
18.8	과세공정성	세금을 공정하게 매기는 것
21	자본주의	자본주의라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면, “모르겠다”라고 체크할 것 필요하다면, 응답자에게 보기카드를 보여줄 수도 있음
	착취	다른 사람의 노동의 성과를 무상으로 취득하는 것
46	가족	미혼자녀는 포함되나, 결혼해서 분가한 자녀는 가족의 범위에서 제외됨
49.9	가구	시에 주거와 생계를 함께 하는 생활 집단으로 동거인, 고용인도 주거와 생계가 공동이면 가구원이라는 점에서 가족과 구분됨
	가구주	한 가구의 대표자
54.1	피고용인/ 임금근로자	임금이나 봉급을 받고 남에게 고용된 사람
56.1	자영업자	자기 책임 하에 독립적인 형태로 일을 수행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
54.2 56.2	상용직	고용계약이 길어서, 비교적 오랜 기간 근무할 수 있는 경우임 (예, A회사 대리 등)
	임시직	고용계약이 대체로 1개월은 넘지만 1년을 넘지는 않는 경우임 (예,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기능공 등)
	일용직	고용계약이 대체로 1개월을 넘지 않는 경우임 (예, 아르바이트 판매원 등)
	동일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여도 근로계약이 임시이면 ‘임시근로자’에, 일용이면 ‘일용근로자’로 표시함	
54.3 56.3	시간제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과 같이 일을 시작할 때 몇 시간이나 일(근무)할 것인지 미리 결정한 경우. 수시로 시간 날 때마다 일하는 경우도 포함됨
	전일제	몇 시간이나 일할 것인지 정하지 않고 하루 종일 근무하는 일반적인 경우
54.6	공기업	정부에서 운영하는 기업(예, 한국전력, 가스공사 등)
56.6	공익기관	각급 학교나 병원 등의 비영리 기관(사립시설이어도 해당됨)
54.10 56.8	무급가족종사자	보수를 받지 않고 가족의 일을 도와주는 사람 가족의 일을 도와주더라도 월급을 받는 경우는 피고용인이 됨
59.5	관공서 국장	중앙행정부처의 2-3급 공무원
59.22	미성공	재봉틀 일을 하는 기술직 노동자
67.7 93.7	가족친화적 제도	기업에서 직장과 가정에서의 일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남녀근로자를 지원해주는 기업내부의 제도(예, 기업탁아시설, 육아 및 가족부양에 대한 정보제공 및 상담 등)